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의자 : 김정재 · 박충권 · 박덕흠
조지연 · 강명구 · 김미애
서일준 · 이달희 · 박대출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 군(軍)은 현재 육군 · 해군 · 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,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 ·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(軍宗)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,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 · 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14916호),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19호), 「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23호) 및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2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“각 군 참모총장”을 “각 군(육군·해군·공군 및 해병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참모총장(육군·해군·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“본부”를 “본부(육군·해군·공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군사법원법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,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군사법원법」에 따라 해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,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,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해병대 검찰단 고등

검찰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은 해병대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.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군사법원법」에 따라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,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,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해병대 검찰단 보통검찰부의 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은 해병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.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군사법원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	제4조의2(군사법원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 위원회(이하 “군사법원운영위 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국 방부장관이 되고,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군인사법」 제21조에 따라 <u>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</u> <u>무병과장 각 1명</u>	3. ----- <u>각 군(육군 · 해군 · 공군 및</u> <u>해병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<u>참모총장(육군 · 해군 · 공군</u> <u>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</u> <u>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4(군사법원의 관할)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, 피 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 속된 부대 또는 기관[국방부, 국방부 직할부대, 각 군 <u>본부</u> 나 편제상 장성급(將星級) 장교가	제12조의4(군사법원의 관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본부(육</u> <u>군 · 해군 · 공군 본부 및 해병</u>

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. 이하 “부대”라 한다]의 소재지,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.	<u>대사령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